

의무기록 사본발급

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
Home > 진료안내 > 의무기록 사본발급

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
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.

환자의 과거병력, 수술 및 경과기록,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

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3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절차 안내

- 1 접수
2.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
3. 수납 및 수령

구비서류 안내

■ 환자 본인 신청

신청인		구비서류
환자 본인	만 14세 이상	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※ 만 14세 - 16세 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재학증명서)
	만 13세 이하	본인 발급신청 제한 ※ 만 10세 -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

■ 대리인 신청

신청인		구비서류
친족	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	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·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) · 환자,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	형제, 자매 (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재 시 발급신청 가능)	
대리인	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(재 위임 가능)	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· 환자,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
■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

신청인		구비서류
직계가족	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	· 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법원결정문 등) · 신청자 신분증
대리인	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, 보험회사, 지인 등 (재 위임가능)	· 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 신분증 · 신청인 신분증 · 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· 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인	분류	구비서류
공통	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	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소견서
	환자사망	사망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	환자 행방불명	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	환자 의사무능력자	법원의 금지선 선고 결정문, 성년후견인 결정문
친족	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	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· 신청자 신분증
	대리인(재 위임가능)	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·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· 신청자 신분증
직계가족 부재 (형제, 자매 발급신청)	형제, 자매	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·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 · 신청자 신분증
	대리인(재 위임가능)	·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·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· 신청자 신분증
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- 신분증은 **국가기관이 발행한** 본인의 사진,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함.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증, 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 등)
-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**환자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,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(건강보험증불가)**
- 동의서, 위임장 작성 시 **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, 자필서명 (도장, 지장 발급불가)**
- 동의서, 위임장 양식은 **보건복지부 지정 양식**으로 병원 홈페이지,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.
-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**3개월만** 유효함.
- 환자(직계가족)이 지정한 대리인이 **재위임(복위임)** 시 반드시 **환자(직계가족)의 동의** 필요